



제조물책임법(안)입법예고

제정경제부 공고 제1999-81호
법 무 부 공고 제1999-22호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7월 13일

제정경제부 장관
법 무 부 장관

제조물책임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조자 등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2조)
-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함(안 제3조)
- 다. 손해배상 책임주체(제조자등)는 원재료·부품·완성품 제조자,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수입업자로 하되, 제조

-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경우와 같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6조)
- 마.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등 일정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면책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 바. 이 법에 의한 제조자등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여 사업자의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회피행위를 방지함(안 제9조)
- 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자등을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청구권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제조자등이 제조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함(안 제10조)
- 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자정책과장, 전화 : 503-9060/1) 또는 법무부장관(참조 : 법무심의관, 전화 : 503-70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필요한 사항